한 · 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쟁점사항과 대응전략

申 龍 相 (研究委員, 3705-6330)

한 · 미 FTA 금융서비스시장 개방협상이 진전될 경우, 미국에 비해 금융고객 보호에 대한 법체계가 빈약한 국내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. 정부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,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양국간 감독수준 차이의 해소를 위해 감독기관간 동등성 원칙을 담은 MOU를 체결하는 등 감독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임.

- 한·미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상승시켜 한·미간 교역규모와 투자를 크게 증가시키고, 이에 따른 금융서비스 수요 증가로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.
- 우리나라는 이미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IMF 긴급자금지원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 서비스의 대외개방이 선진국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.
 - 외국인 주식 및 채권 투자가 완전자유화되었으며, 은행과 증권 부문에서 이전에 금지 되었던 현지법인 설립까지 허용됨으로써 금융서비스 공급기업의 법적형태에 관한 제 한이 대부분 철폐됨.
 - 1999년에는 금융서비스의 '해외소비'와 '국경간 서비스 공급'이 해상보험업, 신용정보업·신용평가업·투자자문업에 대해 허용되었으며, 증권업 및 외환거래의 '해외소비'도 허용됨.
 - 은행업중 외환업무에 관한 각종 제한도 폐지되었으며, 금년 들어 국내 자본시장에서 비거주자의 원화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과 단기원화증권 발행이 허용됨
-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규제가 잔존하고 있어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¹⁾과 해외소비²⁾ 형태의 금융서비스 공급의 제약사항으로 작용함.
 - 예들 들어 은행업 중 예금 및 대출 관련업무와 생명보험업, 손해사정, 보험계리, 보험 중개, 보험대리업의 경우에는 국경간 공급이나 해외소비의 형태로 공급될 수 없게 되 어 있음.

¹⁾ 금융서비스의 '국경간 공급(mode 1: cross-border supply)'이란 일국에 위치한 금융회사가 타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상업적 주재(지점 및 자회사)없이 공급하는 금융서비스(예: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서비스)로 정의됨.

^{2) &#}x27;해외소비(mode 2: consumption abroad)'란 소비자와 그의 재산이 서비스 취득을 위해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이동(예: 관광, 해외유학, 선박수리, 항공기정비 등)하는 경우를 말함.



금융 포커스

■ 과거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이 상업적 주재(mode 3: commercial presence)에 기반을 둔 개방형태로 대부분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. 한·미 FTA의 금 융서비스시장 개방협상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및 新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 여부에 집중될 것 으로 예상됨.

가.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(cross-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)

- 현재 각국의 WTO 협상 양허안에는 해상보험, 항공보험, 재보험 등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양허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.
 -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. 여신전문금융업법. 종합금융회사법의 사업영위가 상업적 주 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사실상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허가하지 않 고 있음.
- 최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제도적으 로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.
 - 선진국들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비하 여 향후 다자가 및 양자가 협상에 대비하고 있으며 한 · 미 FTA 협상에서도 미국은 국 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한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.
 -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측면을 위해서도 금융서비스 경쟁과 혁신을 제 고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 하며, 이런 측면에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점진적 개방이 필요함.
 - 협상결과에 따라 국경간 거래를 개방하는 경우. 이를 규제 ·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근 거가 현재까지는 전무한 실정임.
- 그러나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개방의 긍정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.
 - 즉.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업종의 외국 금융회사 진출로 인해 국내시장이 외국 금융회사에 의해 독점될 경우, 상업적 주재를 근간으로 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과 달리 고용창출. know-how 이전 등과 같은 개방의 부수적 · 긍정적 효과를 이 끌어 내기 어려움.
-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①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 정도와 ② 감독유형의 선택으로 요약할 수 있음.
 - 세계화의 물결과 실물거점이 없는 가상공간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금융이 발달하면서 각국의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한 규제·감독의 이용국가기준 적용이 점차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제공국가 감독기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짐.
 - 따라서 향후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개방은 국내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 는 감독기능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며, 이를 위해 단계적인 개방을 유도하여 각 단계 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이 실행되도록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.

- 현재 국내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한 감독은 국경간 거래를 고려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 부문 개방에 대비한 감독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.
 -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기 이전에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을 충분히 향상시키는 동 시에 선진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 재 영업규제중심의 금융감독체제에서 위험중심(risk-based) 감독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.
-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는 규제·감독 기준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규제·감독을 위해서는 양국 감독기관간의 협조가 긴요함.
 - 자국의 금융서비스 이용고객 보호를 위한 규제 · 감독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지식과 경 험을 가지고 있는 이용국가 감독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이용국가방식 이 가장 바람직하나. 물리적 실체가 없는 국경간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국가가 감독하 는 데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함.
 - 따라서 개방 초기에는 이용국가 감독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. 향후 국경간 거래가 활발해져 국가간 감독방식 차이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점진적인 제공국 가 감독방식 적용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그러나 제공국가 감독기준의 적용시에는 이용국가 감독기관이 제공국가 감독기관에 의존해야 하므로 제공국가 감독기관의 능력에 대한 신임이 무엇보다 중요함.
 - 이를 위해 이용국가와 제공국가 감독기관 가에 동등성 원칙 등이 담긴 MOU를 체결함 으로써 국가간 감독수준의 차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함.
- 또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통한 해외진출도 고려하여 개방수준 및 개방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임.
 - 향후 국가간 금융서비스 거래에서 국경간 거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계획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임.

나, 新금융서비스3)

- '新금융서비스' 개방을 허용할 경우. 회원국은 자국영토 내에 설립된 타회원국의 금융서비스 제 공자가 자국영토 내에서 타회원국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함.
 - 新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은 미래에 출현할 수 있는 잠재적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개방 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감독체계 미비라는 문제점을 안게 됨.
 - 각국의 FTA에서도 新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협정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

^{3) &#}x27;新금융서비스'는 특정 회원국 내에서는 어떤 금융기관도 공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회원국 내에서는 공급되는 금융서비스로 정의됨.



금융 포커스

리나라가 체결한 한국-싱가포르. 한국-EFTA(유럽자유무역 연합) FTA에서는 新금융 서비스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.

- 금융상품에 대해 열거주의(positive system)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한·미 FTA를 통해 新금융서비스를 개방하면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.
 - 포괄주의(negative system)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금융회사가 자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음.
- 따라서 新금융서비스가 개방될 경우, 금융고객 보호에 관한 법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빈약한 우 리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.
 - 新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, 따라서 상품공시, 분쟁해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.
 - 또한 현재의 금융분쟁 해결제도와 관련하여 분쟁해결에 대한 금융감독워의 권한이 상 호간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분쟁해결능력에 한계가 있으며, 소비자 분쟁기구간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낮아 사후적 소비자 보호도 미흡한 실정임.
- 미국은 한·미 FTA 협상과정에서 新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 비스 업종에 대하여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.
 - 금융서비스의 life-cycle이 짧아지고 지속적으로 진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. 新금융 서비스가 미래 금융상품에 대한 개방을 미리 약속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 - 그러나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新금융서비스의 개방 여부를 판단할 때 개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재조합과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함.
- 감독체계가 없다는 점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금융시장을 혼란시킬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 므로 新금융서비스의 개방은 감독체계가 좀 더 선진화된 이후에 협약하는 것이 바람직함.
 - 新금융서비스 개방에 앞서 금융고객 보호를 위한 국내의 법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 는 것이 필요하며, 나아가 특정 미래시점의 개방에 대비하여 금융감독체계의 선진화 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.
- 新금융서비스 협상의 진행이 불가피할 경우, 미국뿐 아니라 기존 체결국 및 미래 FTA 후보국 들의 금융부문이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개방가능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.
 - 최혜국대우 규정에 의해 미국의 협상결과에 따라 기존 및 미래 FTA 체결국에 대해서 도 新금융서비스를 모두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.
 - 따라서 상대국의 금융 및 보험업 서비스 분류를 상호 비교한 후 금융상품별 개방가능 분야를 선정하고 미래시점의 개방요구에 대해서는 타국간의 FTA 예를 적용하여 개방 을 불인정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.